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편으로 시설설치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어장 설치절차 간소화 (안 제2조제3호 및 제14조의3제3항제7호)

유어장을 공원계획변경, 공원위원회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나.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완화(안 제14조의3)

1) 해상·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탐방객 편의를 위해 한시적(4개월)

허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

2) 상수도, 하수도 등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를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안 제45조의2)

생년월일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서 삭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

라. 과태료 정비(시행령 별표3 제2호)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단위별로 차등화하여 정한 취지를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을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서류에 갈음”을 “첨부서류를 갈음”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천 미터 이내의 지역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제14조의3제3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업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에서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의3제5항제1호가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주차장 및 야영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4호 다목(3)의 특례 규정에 따르며,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내지 제3항에”를 “부터 제3항까지”로,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제9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를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를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로 한다.

제1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량 사업(시설 및 부지면적 증설은 제외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영업의 제한 등)”을 “(영업 등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을 “계곡”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동조제3항”을 “같은 조제3항”으로, “1에”를 “어느하나에”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17호 중 “동조제3항”을 각각 “같은 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법 제76조 내지 제78조”를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로 한다.

제45조의2제3호의3, 제12호,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1호	100	150	200

나.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2호	100	15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3호	100	150	200
라.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4호			
1)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 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마.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1호	20	30	50
바.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	10	10
사. 법 제27조제1항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3항	10	10	10
아. 법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 1항제5호	60	100	200
자. 법 제27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장소·시설에 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 3항	10	10	10
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 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2호	20	30	50
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제6호			
1) 제한이나 금지된营业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60	100	200
타. 법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6조 제1항 제6호의2	50	100	200
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경우	법 제86조 제4항	5	5	5
하.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6조 제2항제3호	20	30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어항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원시설) ----- ----- ----- -----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 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 류시설, 광장, 야영장, <u>청소년</u> <u>수련시설</u> , <u>유어장(遊漁場)</u> , 전 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 (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 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3. ----- ----- ----- ----- <u>청소년</u> <u>수련시설</u> ----- ----- -----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 한 서류)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제2조의3(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 한 서류) ① ----- ----- ----- ----- -----. ----- ----- ----- -----

으로 첨부서류에 같음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생략)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국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생략)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2. (생략)

--- 첨부서류를 같음-----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등)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
---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

5.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u>아니하다고</u>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u>아니하는</u> 경우 5. (생략) ② (생략)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u>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해안: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 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생략)	3. ----- ----- ----- <u>않다고</u> ----- ----- 4. ----- ----- ----- <u>않은</u>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u>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해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천 미터 이내의 지역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역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현행과
---	---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설>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1. 국방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안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7. 「수산업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에서 「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가. ----- 않는

이하는 범위에서 행하는
군사훈련

나. (생략)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 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나. ~ 마. (생략)

⑥·⑦ (생략)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생략)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량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주차장 및 야영장은 제외한다)

4. ~ 7. (생략)

<신설>

나. (현행과 같음)

2. -----

가. -----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

나. ~ 마.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1.·2. (현행과 같음)

3. -----

--주차장-----
--

4. ~ 7. (현행과 같음)

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

	<u>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4호다목(3)의 특례 규정에 따르며,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u>
제16조(환매권) ① ~ ③ (생략)	제16조(환매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u>부터 제3항까지</u> ----- ----- ----- ----- <u>제9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u> -----.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u>각호</u>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 ----- ----- <u>각호</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사용승낙서(<u>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u> 및 이 영 제20조 <u>각호의 1</u> 에	4. ----- <u>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u> ----- <u>각 호의 어</u>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2. (생략)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시설>

느하나-----

②-----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9호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신고사항) -----

1. ~ 5. (현행과 같음)

6.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량사업(시설 및 부지면

	<u>적 증설은 제외한다)</u>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 (생략)	제19조(신고생략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대상·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u>사항을 포함하여야</u>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②----- ----- ----- ----- ----- ----- ----- ----- ----- ----- <u>사항이 포함되</u> <u>어야</u> ----- ----- --.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생략)	제22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공원관리청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 및 공원관리청에게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본인임을 통지할 것과 그 물건등을 찾아갈 것 등에 관한 안내문(이하 “제거사실 및 안내문”이라 한다)을 통보하여	②----- ----- ----- ----- ----- ----- ----- ----- ----- ----- -----

야 하고, 제거사실 및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공원관리청의 게시판에 <u>1월</u>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 ----- <u>1개월</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u>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6. <u>계곡</u> -----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 ② (생략)	제40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공원관리청이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u>동조제3항</u>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협의대상이 제21조제2항 각호의 <u>1</u>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③----- ----- ----- <u>같은 조제3항</u> ----- ----- ----- ----- <u>어느하나에</u> -----.
제44조(매수절차 등) ①법 제77조	제44조(매수절차 등)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의3. (생략)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u>동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의2. ~ 16의2. (생략) 17.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협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와 <u>동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8. ~ 18의3. (생략) 19. <u>법 제76조 내지 제78조</u>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20. · 21. (생략) ③ (생략)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	----- ----- --. 1. ~ 4의3. (현행과 같음) 5. ----- -----<u>같은 조제3항</u>----- ----- ----- -- 5의2. ~ 16의2. (현행과 같음) 17. ----- ----- ----- ----- <u>같은 조제3항</u> ----- ----- ----- ----- 18. ~ 18의3. (현행과 같음) 19. <u>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u>----- ----- ----- 20. · 2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의2. (생략)

3의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과 해당 협약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4. ~ 11. (생략)

1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원사용료징수 허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60조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전대에 관한 사무

14. · 15. (생략)

16. 법 제73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7.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무

-----.

1. ~ 3의2. (현행과 같음)

<삭제>

4. ~ 1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4. · 1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8. · 19. (생략)	18. · 19.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연공원과	
연 락 처	044-201-7326